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75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.

발 의 자 : 김승원 · 박선원 · 김남근
임호선 · 권칠승 · 이재관
서삼석 · 박수현 · 박범계
이병진 · 최혁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,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.

그런데 유럽연합과 영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과징금의 상한으로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,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등 법 위반 시 현재의 과징금 수준이 억제력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30억원으로 조정하고,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64조의2

제1항).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매출액의 100분의 3을”을 “매출액의 100분의 4를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20억원을”을 “30억원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징금에 관한 적용례)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4조의2(과징금의 부과)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<u>20억원을</u>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	제64조의2(과징금의 부과) ① --- ----- ----- ----- <u>매</u> <u>출액의 100분의 4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30억원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9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~ ⑩ (생략)	② ~ ⑩ (현행과 같음)